전공외국어강좌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국제화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전공외국어강좌를 관리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,3,18,)
- 제2조(강좌 개설) 전공과목 중 외국어로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<u>전임교원은</u>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외국어강좌를 <u>개설</u>할 수 있다. <u>(개정</u> 2018.7.1., 2018.12.12., 2021.6.1., 2022.3.18.)

[제목개정 2018.12.12.]

- 제3조(개설 제한) ① 강좌 개설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실습, 설계시수를 포함하는 강좌
 - 2. 외국어 관련 전공교과목
 - 3. 외국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
 - 4. 기타 교무처장이 지정한 강좌
- ② 수업평가 결과 점수가 7.6점 미만인 강좌 또는 담당교원에 대해서는 평가받는 학기로부터 최대 1년간 전공외국어강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.3.18.]

- 제4조(신청방법 및 강좌 운영) ① <u>강좌 신청은 별도 안내 절차에 따라 외국어 및 국문 수업</u>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② <u>강좌 운영은 100% 외국어로 진행하여야 하고, 학기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좌운</u> 영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- 1. 교안 및 CQI보고서(국문)
- 2. 중간 · 기말 등의 시험 평가지 및 답안지 사본 2매 이상
- 3. 기타 강좌운영결과 제출 시 요청한 사항
- ③ 강좌운영결과 미제출 강좌는 전공외국어강좌 개설(승인)을 취소한다.
- ④ <u>수강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 후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</u> [전문개정 2022.3.18.]

제5조(강좌운영 지원) ① 해당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업보조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유학생 대상의 별도반 강좌는 6학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2.3.18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제5조제3항제5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</u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